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
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002호
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최근 사회 전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임신 · 출산 · 육아에 대한
공동 책임과 권리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, 이를 이유로
한 차별과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
- ☐ 이에, 상위법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모성권 · 부성권 보장

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,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